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허창원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 및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경우

나.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1951년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제정 이후, 1995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개정되면서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2006년 3월 24일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로 개정되면서 규제중심에서 기부 활성화로 정부정책이 전환됨.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에 대한 접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접수 여부에 대해 지역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5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도에서는 조례 제정 없이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10.6.8)하여 기부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음.
- 또한, 충북은 최근 5년 간 116건의 자발적 기부금품을 기탁 받아왔지만,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 운영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지정기부금품 접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심의 건수	기탁 금 품			비 고
		계	현 금	물 품	
계	116	7,602	2,896	4,706	
2020년	27	1,010	242	768	9.30기준
2019년	23	1,686	591	1,095	
2018년	25	1,187	579	608	
2017년	23	1,682	1,220	462	
2016년	18	2,037	264	1,773	

- 타 광역시도(13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에게 행사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공공시설 이용 편의, 명예의 전당을 통한 업적 게시 등 예우하고 있으며,

도내 4개 시군(청주·충주·제천·충주)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

《 타 시도 및 시군 조례 운영현황 》

① 광역시·도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부산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016. 2. 17.
대구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017. 8. 10.
인천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6. 3.
광주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17. 3. 1.
대전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018. 4. 20.
울산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017. 8.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18. 4. 10.
경기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7. 19.
전남	전라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18. 10. 4.
전북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18. 12. 28.
경북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2. 20.
경남	경상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6. 11.

② 도내 시군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청주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7. 5. 19.
음성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6.
제천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17. 9. 29.
충주	충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2. 31.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기부금품을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이나 금품으로 정의함.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자에게 적용토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영구보존하고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단 관리 방법 및 기부증서 양식 등 기부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 등의 마련이 요구됨.
- 안 제6조는 기부자에 예우에 관한 조항으로 기부자 명단 공지, 행사 초청,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 제8조는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금품의 접수 여부, 기부자 예우, 도 기부문화 확산 정책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게하고,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도지사), 부위원장(행정부지사)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함.
 - 의결정족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세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의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